



| 항공화물사/물류기업 인센티브 (21년 기준)

구분		인센티브 내용	
화물기 운항	신규취항	2년간 착륙료 100% 지원	
	택1	신규노선	2년간 착륙료 지원 (1년차 100%, 2년차 50%)
		증편운항	전년동기 대비 MTOW 증가분에 대해 착륙료 지원 (1년차 75%, 2년차 50%)
		심야운항	심야시간 도착편 (23:00~04:59) 착륙료 지원 (1년차 50%, 2년차 25%)
물동량 증대	화물항공사	여객기 화물 : 전년비 환적화물 물동량 증가 톤당 1만원 지원 화물기 화물 : 전년비 환적화물 물동량 증가 톤당 2만원 지원 ※ 총합 최대 20억원 한도	
	물류기업	전년비 총 화물 물동량 증가 톤당 2만원 지원 ※ 총합 최대 10억원 한도	
新 성장화물 (GDC 유치)		글로벌 배송센터에 대해 화주별 국외반출 신고 처리 톤당 5만원 지원(최대5억원)	



| 토지임대료 인센티브

국내외 기업이 입주자시설 개발을 위한 설계, 시공, 감리에 소요되는 실제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시행

▶ 제조기업

투자금액	인센티브
1,000 만불 이상 투자 시	3년간 50% 감면
3,000 만불 이상 투자 시	5년간 100% 감면
5,000 만불 이상 투자 시	7년간 100% 감면

▶ 물류기업/글로벌 배송센터/물류시설개발업/도매업

투자금액	인센티브
500 만불 이상 투자 시	3년간 50% 감면
1,500 만불 이상 투자 시	5년간 100% 감면
3,000 만불 이상 투자 시	7년간 100% 감면

※ 글로벌배송센터는 감면기간 종료시점 직전 8분기 물동량이 협약기준(협약서 제3조 7호)충족시 1년씩 3회까지 감면기간 연장

▶ 전체 기업 대상 추가 감면

구분	내용
기간	토지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시점 직전 8분기 동안
조건	해당기업 처리물동량이 동기간 공항물류단지 총 물동량의 10% 초과시
추가감면	토지임대료 감면기간 1년 추가

항공화물사/물류기업

토지 임대료

경제자유구역/경제무역지역



| 경제자유구역/자유무역지역 인센티브

구분		지원내용	비고
조세감면	지방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1천만불 이상 - 물류업 5백만불 이상 - R&D 1백만불 이상 ('22.12.31 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득세, 등록세(市稅) - 15년간 100% 재산세(區稅) - 10년간 100% - 3년간 50%
	관세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물품 비관세: 자유무역지역 - 수입자분재 3년간 관세면제: IFEZ - 반입신고 대상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로 보아 관세등을 환급 기계, 기구,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, 운할유,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	해외 반입 모든 생산설비/물품 등 무관세
	부가세 영세율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FTZ로 반입 신고 대상 내국물품 중 기계, 기구,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, 운할유,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- FTZ 입주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	공장설립에 필요한 원자재, 기계설비 등 부가세 면제

※ 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(<http://www.fez.go.kr/>) 를 참조하십시오.

※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중 유리한 기준 선택적용 가능 (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지분율만큼 인정)